

임실군의회 입법예고 공고 2024 - 11호

임실군의회 이성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「임실군 공무원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게재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「임실군의회 회의규칙」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4. 3. 13.

임실군의회 의장



임실군 공무원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재취업 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

1. 제정이유

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 예정인 임실군에서 근로하는 공무원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에게 교육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군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공무원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의 목적과 정의 규정(안 제1~안 2조)
- 나. 공무원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 관련 군수의 책무 및 제공 대상 규정(안 제3~안 4조)
- 다. 공무원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실시 위탁에 관한 규정(안 제5~안 6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」,
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부 (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)
- 다. 입법예고 : 2024. 3. 13. ~ 2024. 3. 18. (5일간)
- 라. 붙임 : 조례안,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, 관계법령

임실군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 예정인 임실군에서 근로하는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에게 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군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공무직근로자”란 「지방공무원법」상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실군(본청·직속기관·사업소·읍면)에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.
2. “기간제근로자”란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실군(본청·직속기관·사업소·읍면)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.
3. “재취업지원서비스”란 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1조의3 따른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예정인 근로자의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말한다.

제3조(군수의 책무) 임실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

립·시행하고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대상) ① 군수는 법 제21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이직예정인 공무원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1. 이직예정일이 50세 이상이 되는 연도에 있을 것
2. 「고용보험법」 제50조제3항에 따른 피보험기간이 이직예정일 전날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일 것. 다만,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제 근로자는 해당 피보험기간이 이직예정일 전날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이어야 한다.

② 군수는 이직예정인 공무원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가 재취업의 확정 등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받지 않겠다고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.

1. 퇴사 후 취업 또는 창업할 것이 확정된 경우
2. 퇴사 후 취업 등의 의사가 없는 경우
3. 질병, 부상 등으로 인해 재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어려운 경우

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해당 근로자가 퇴사한 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

제5조(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) ① 군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1.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

2. 그 밖에 군수가 재취업 또는 창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

② 군수는 서비스 신청자에 한하여 제4조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대상자에게 그 이직예정일 전 3년 이내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.

제6조(재취업지원서비스 실시의 위탁)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재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대상자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법 제21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임실군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재취업 지원서비스
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 요인

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2호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4. 작성자 : 임실군의회 이성재 의원

□ 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」

제21조의3(퇴직예정자 등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)

- ① 사업주는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예정인 근로자에게 경력·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, 취업알선,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(이하 “재취업지원서비스”라 한다)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□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

제1조(목적)

이 법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0조(취업촉진을 위한 국가 등의 노력)
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용정보의 제공, 직업지도, 취업알선, 직업능력개발 등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